
Ⅱ.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

1. 제도 환경의 변화

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자산운용 등 퇴직연금과 관련한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 도산 및 파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기초한 규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무건전성 유지중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제체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기업 중 약 31%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DC형 제도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1〉 건전성 규제의 현황과 변화

구분	건전성 규제 현황	건전성 규제 변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검증기준 미비• 최소한의 건전규제- 기존기업 비용부담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검증 기준 구체화- 적립금 과부족 시 적기시정 조치 마련• 최소적립수준 상향조정

우리나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적립금 부족 시 적기시정조치를 마련하는 등 연금재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DB형 제도의 최소적립수준(최소책임준비금)은 적정 책임준비금의 60%로 되어 있으나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최소적립수준을 70%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즉, DB형 의무적립비율을 7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상향조정하여 100%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표 II-2〉 DB형 제도의 적립금 의무적립비율 고시안

연도	2010	2011	2012	2013 이후
의무적립비율	70%	80%	90%	100%

주: 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의무적립비율의 상향조정 시기가 연기될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2010. 11), 근퇴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

이러한 규제감독체계의 변화는 근로자에게는 DB형 퇴직연금 선택의 유인효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면 기업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메리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일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의 규제강도와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규제수준은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는 세계적인 부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상황에서 도산 및 파산을 한다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없어 퇴직금 사내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왔다. 이는 퇴직연금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도 시도되었던 제도이다. 퇴직금제도하에서 1967년에는 100%까지 손비인정을 허락하였지만 1973년에는 50%로 축소, 1999년에는 40%로 축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7년에는 35%로 축소하고 2009년에는 30%까지 축소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2010년 8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액을 사내 유보하는

경우 손비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 후 폐지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여 사내 유보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손비한도를 매년 5%를 감소시켜 2016년에는 손금한도혜택이 사라질 것이다.

〈표 II-3〉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한도 개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금산입 한도 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10</th> <th>'11</th> <th>'12</th> <th>'13</th> <th>'14</th> <th>'15</th> <th>'16</th> </tr> </thead> <tbody> <tr> <td>30%</td> <td>25%</td> <td>20%</td> <td>15%</td> <td>10%</td> <td>5%</td> <td>0%</td> </tr> </tbody> </table> <p>* 단, 既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 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경과조치)</p>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자료 : 기획재정부(2010. 8. 24).

이러한 재무건전성 규제수준 및 세제혜택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규기업의 경우는 DC형 제도 가입 선호로, 가입기업의 경우는 DB형 제도 이탈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규제환경의 글로벌화

기업이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함에 따른 리스크가 규제환경의 글로벌화에 따라 점점 가중되고 있다. 80년대 이후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화 되어가는 경영환경에 발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운영부담이 적은 DC형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 은퇴자들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DB형의 유산(legacy)비용 증가 등 운영부담이 가중되고 근로자의 이직이 보편화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자조노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통산성(portability) 등 DB형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는 DC형으로 전환을 꾀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에서 DB형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퇴직연금관련 미국회계기준(FAS 158)과 최근 금융시장 침체에 따른 DB형 적립자산 평가액 하락 등으로 인해 DB형 퇴직연금의 자산이 축소되고 있다. 즉 사외적립자산과 예상급부채무를 시가평가하고 대차대조표에 반영하도록 하여 DB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자산운용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영업실적도 악화되어 퇴직연금의 적립금액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역시 2000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부회계기준이 도입되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기업은 감추어진 부채가 표면화하게 이르렀다. 이러한 잠재적 부채의 계상(적립부족액)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0년 당시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현황을 살펴보면 적립률이 64%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적립부족액은 기업의 이익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I-4〉 일본기업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유

(n=151)

기업의 도입 이유(3가지 선택)	응답률
신 회계기준에 부합한 퇴직급부채무의 경감	48%
종업원 본인이 노후소득보장을 고민할 계기	43%
기업의 재무체질 개선	42%
급여, 보수체계 재구축	32%
복리후생의 충실 및 재구축	26%
종업원 노후생활보장의 다양화	24%
이직 시 통산성 확보	17%
인재확보 등을 위한 기업 장점 향상	15%
종업원, 노조 요청	6%
기타	10%

자료: 田村正雄(2004).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매년 중간 정산하는 것과 유사하여 퇴직급여채무가 경감되는 확정기여형 연금에 주목하게 되었고, 기업이 아닌 근로자가 자산운용 및 결과에 책임을 지는 DC형 퇴직연금의 가입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운용규제완화와 맞물리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니즈를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중심으로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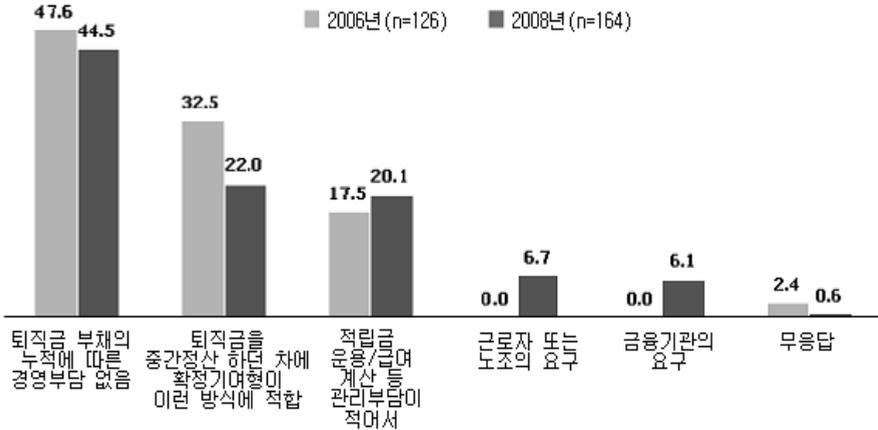
〈표 II-5〉 규제환경의 변화(글로벌화)

구분	규제환경의 현황	규제환경의 글로벌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기준에 입각한 회계처리 • 재정방식의 다양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기준의 글로벌화(퇴직연금) - 계리적 가정으로 부채평가(PBO) • 계리기준의 글로벌화(재정방식)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과 같은 규제의 글로벌화는 상대적으로 DB형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예정에 있으며 DB형 기업의 수익 변동성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김원식·신문식(2006, 2009)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확정기여형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정기적인 부담금 납부로 퇴직금 부채가 매년 청산되므로 퇴직금 부채의 누적에 따른 경영부담 없음(44.5%)’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잠재적인 부채의 계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보다 가시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1〉 국내 기업의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유

(단위: %)



자료: 김원식 · 신문식(2006, 2009).

다. 확정기여형 중심의 근퇴법 개정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DC형 퇴직연금중심으로 시장재편이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DC형 퇴직연금중심으로의 시장 재편은 DB형 중심의 제도적 개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수사용자의 DC형 퇴직연금제 설정, 가입자의 DB형 및 DC형 동시 설정 허용,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중간정산 및 담보대출 완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등과 같은 DC형 퇴직연금중심의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I-6〉 「근퇴법」 현황과 개정

구분	현행 「근퇴법」	「근퇴법」 개정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DC형의 통산성 장치 부재 중소기업의 DC형 유인효과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수사용자 DC형 설정허용(연합형 등) 중간정산 및 담보대출 완화 DC형 추가납입 및 현물이전 허용

이번에 마련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역시 DB형 퇴직연금보다 DC형 퇴직연금관련 제도개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제도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 강화차원에서 이루어진 연합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담보대출 활성화, 퇴직급여제도의 연속성차원에서 이루어진 DC형 퇴직연금의 현물이전 허용, 제도 확산 측면에서 이루어진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개선 등은 DC형 시장의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 등은 설계사 중심으로 퇴직연금 판매채널을 변화시켜 점진적으로 중소형 사업장의 DC형 가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자산운용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는 양적규제방식을 기본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제한 등 규제의 정도가 주요국에 비해 보수적이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가 점진적으로 양적규제방식에서 선량한 관리자 의무에 기초한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어 다양한 투자상품의 조합이 가능하고 이는 DC형 선택 유인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적립금 규제완화 이전 보다 규제완화 이후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되어 투자의 선택 폭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일례로 퇴직연금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5년 이후 미국은 DC형 퇴직연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네덜란드 역시 전통적으로 DB형 중심으로 시장이 이루어졌으나, 규제완화에 따른 대체투자 증대 등으로 DC형으로의 전환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일반적인 트렌드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타워스 왓슨이 발표한 Global Pension Asset Study(2009)

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998~2008) 주요국 DC형 자산비중은 15%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제완화에 따른 운용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DB형 편중현상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완화의 수준 여하에 따라 DC형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규제완화에 따른 다양한 투자운용상품 개발과 같은 자산운용환경은 장기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중심의 DB형 가입 패턴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표 II-7〉 자산운용환경의 현황과 변화

구분	자산운용환경 현황	자산운용환경 변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규제 제한(운용손실 고려) - 법에 의해 엄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관주의에 입각한 자율규제 - DC형 운용규제 대폭 완화작업

일부 근로자의 경우 DB형 제도는 본인이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DC형 제도는 운용성과에 따라 은퇴 이후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오해하여 DB형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DB형 제도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DB형의 퇴직급여금액은 퇴직금제도의 퇴직일시금 이상이면 되므로 DB형 제도하에서는 퇴직금이 퇴직금제도의 일시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 수준은 '30일×평균임금×근속연수'로 계산된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는 결국 근로자가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받은 1일 임금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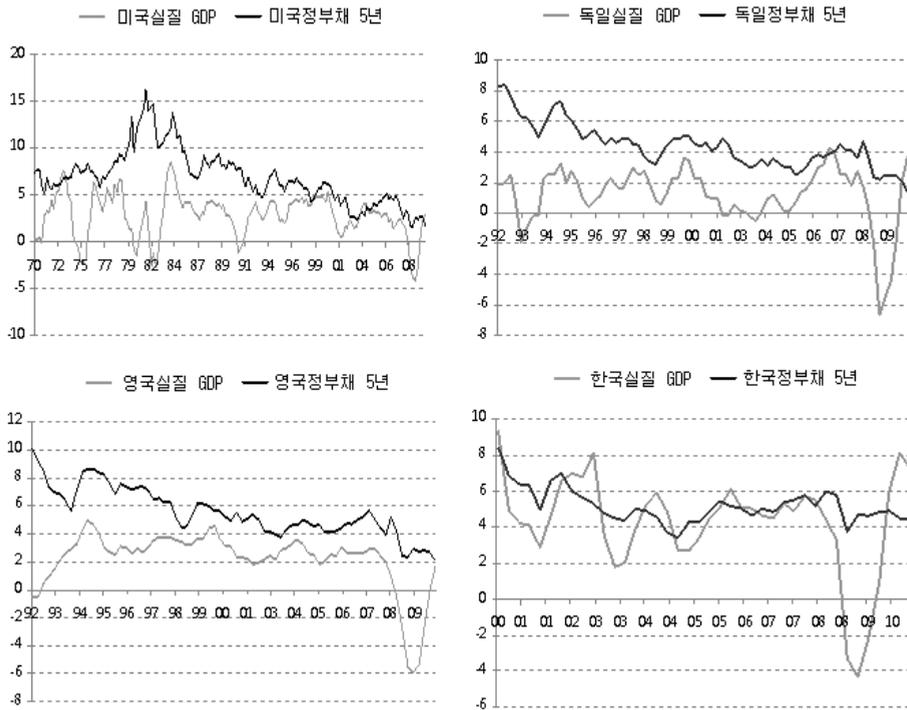
반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년 등)으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

자가 그 납부액(적립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결정된다.

피상적으로는 DB형 제도하에서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어 있고 DC형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어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DB형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 임금수준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근퇴법」에 의해 현재는 사용자가 사외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수준이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 퇴직급여채무의 60%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 및 파산 시 수급권 측면에서도 취약해, DB형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¹⁾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매분기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퇴직금이 축적되므로 본인의 노후소득재원에 대한 불확실성은 적다. 물론 근로자 본인 책임하에 자산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위험회피적(Risk Averse)인 근로자나 자산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근로자는 안정적인 확정금리형 운용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본인의 퇴직급여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를 발굴하거나 금융시장 환경이 호전될 경우 확정금리형 운용 방법보다 다소 공격적인 자산운용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될수록 그리고 근로자들의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할수록 뚜렷해 질 것이다. 더군다나 장기적으로는 실질소득증가율보다는 실질이자율이 높아 DC형 제도에서의 확정금리형 또는 변동금리형과 같은 안정적인 운용전략에 근거한 퇴직급여액이 DB형 제도에서의 퇴직급여액보다 높을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한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실질이자율이 실질소득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도 향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1) 「근퇴법」 개정안에 따라 최소적립수준이 매년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2〉 각국의 실질GDP 및 실질이자율 추이



3.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고용환경이 점차 연공서열·중신고용 중심에서 실력·성과주의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누진제 성격 등으로 노무관리에 강점으로 작용한 DB형 퇴직연금의 메리트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노동의 유연성과 통산장치가 원활하게 작용하는 DC형 퇴직연금의 메리트는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와 고용환경이 거의 유사한 일본 역시 기업의 성과주의 중심 노사관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신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이 길지 않고, 조기퇴직 및 이직이 일반화되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퇴직급여제도에서 이직에 따른 통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4년 11개월이며 정규직의 경우 6년 7개월, 비정규직의 경우는 1년 9개월에 불과하다. 조기퇴직이 일반화되고 취업연령도 증가하여 정년까지 일했던 종전에는 40년 일하고 노후 20년을 퇴직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근로기간이 단축되고 노후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로 정산과 통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도 DB형보다는 DC형 제도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표 II-8〉 근로형태별 평균근속기간

구분	평균근속기간		
	2007. 3	2008. 3	2009. 8
〈임금근로자〉	4년 6개월	4년 8개월	4년 11개월
정규직	5년 11개월	6년 1개월	6년 7개월
비정규직	2년 2개월	2년 2개월	1년 9개월

자료: 통계청(각 연도).

임금수준이 점차 실력·성과주의 중심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연봉계약, 성과급 비율의 증가 및 임금피크제와 같은 다양한 임금결정 방식이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인이 은퇴 할 때에 받게 될 퇴직급여액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지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DB형보다는 오히려 DC형 제도를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4. 수요자 가입행태의 변화

일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田村正雄(2004)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유로는 ‘본인이 직접 자산운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39%)’,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39%)’, ‘자조노력에 의한 노후생활 대비(28%)’, ‘이직해도 손해 없이 지속적으로 자산형성 가능(17%)’, ‘기업연금·퇴직금이 충분하지 않아 불안하기 때문(16%)’, ‘가족이나 주변에서 권하기 때문(2%)’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근로자의 경우 직접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메리트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가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9〉 일본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유

(n=327)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유(3가지 선택)	응답률
본인이 직접 자산운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39%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	39%
자조노력에 의한 노후생활 대비	28%
이직해도 손해 없이 지속적으로 자산형성 가능	17%
기업연금·퇴직금이 충분하지 않아 불안하기 때문	16%
가족이나 주변에서 권하기 때문	2%
기타	5%

자료: 田村正雄(2004).

또한 미국 자산운용협회(ICI: Investment Company Institute)가 DC형 가입자들에게 DC형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8%가 ‘본인이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85%는 ‘현재 자신이 가입한 플랜의 상품라인업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DC형 가입자들의 설문조사를 고려할

때, 자기 책임하에 투자상품을 선정하고 운용하기 위해 DC형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수요자의 가입행태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가입 이후에도 만족도가 63%에 달하는 반면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은 6%에 불과하다.²⁾

〈표 II-10〉 DC형 가입자들의 DC형 제도에 대한 의견

(단위: %)

질문 항목	2009년
정기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등락에 대한 걱정을 덜하고 있음	58
본인이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98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상품라인업을 좋다고 생각함	85

자료: ICI의 미국가계조사(2009년 11~12월).

미국의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가입추이를 볼 때, 근로자가 자산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DC형에 가입한 기업 비중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 즉 1992년 이후 100인 이하 기업뿐만 아니라 100인 이상의 기업에서도 DC형 가입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DB형 가입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DC형 위주로 수요자의 가입행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ICI의 미국가계조사(2009년 11~12월).

〈표 II-11〉 기업규모(근로자 수)별 퇴직연금 가입추이(미국)

(단위: %)

구분	기업규모(근로자수별)					
	10인 이하	10~19인	20~99인	100~499인	500인 이상	
1992	DB	34.2	63.0	38.0	44.4	41.6
	DC	56.4	30.1	54.6	44.0	36.8
	DB+DC	9.4	7.0	7.4	11.6	21.6
1995	DB	45.7	31.2	26.8	23.2	28.1
	DC	49.6	64.7	64.3	63.6	52.2
	DB+DC	4.7	4.1	8.8	13.2	19.7
1998	DB	18.5	8.6	25.7	23.0	20.9
	DC	76.1	81.4	65.4	58.9	57.9
	DB+DC	5.4	10.0	8.8	18.1	21.2
2001	DB	16.5	12.8	15.3	22.0	23.5
	DC	77.1	80.5	76.3	64.6	54.3
	DB+DC	6.4	6.7	8.4	13.4	22.2
2004	DB	30.1	18.2	20.1	30.2	25.9
	DC	63.8	73.5	69.9	54.9	51.6
	DB+DC	6.2	8.3	10.0	15.0	22.6

자료: Employer Benefits Research Institute estimates of the 1992~2004.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08)가 국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DC형 퇴직 연금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 및 급여 수준 기대(33.5%)’, ‘퇴직급여를 별도로 적립하므로 수급권 보장(24.4%)’, ‘스스로 적립금 운용을 할 수 있어서(19.5%)’ 등이 주된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유로 나타나, 자기 책임하에 자산배분과 운용으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니즈는 점점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즉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들과 달리 DC형에서는 가입자 개개인이 자신의 투자성향과 재정상황에 맞는 투자결정을 통해 노후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표 II-12〉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유

(n=221, 복수응답)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유	응답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 및 급여 수준 기대	33.5%
퇴직급여를 별도로 적립하므로 수급권 보장	24.4%
스스로 적립금 운용을 할 수 있어서	19.5%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므로 따라서 선택	9.5%
다른 형태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	2.7%
정확한 정보가 없어 잘 모르고	2.3%

자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08).

이러한 수요자의 가입행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근로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향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차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표 II-13〉 수요자 가입행태의 현황과 변화

구분	수요자 가입행태 현황	수요자 가입행태 변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에 따른 책임 취약 - 손실에 대한 우려 DC형에 대한 상대적 인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이해도 증가 자기 책임하에 자산운용 선호 - 미국사례 중심으로 전환 예상 대기업, 중소형 기업의 DC형 선호

그 이유는 일괄서비스체제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보다 가능하고 이를 통해 비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수요자의 가입행태 변화가 서비스 및 비용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한 서비스 및 상품개발이 DC형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사업자 경쟁양상의 변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의 경쟁환경이 점차적으로 서비스 경쟁, 중소기업 중심 경쟁, 운용능력 중심 경쟁(자산배분능력 위주 경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고금리 및 수수료 중심의 가격경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DC형 중심의 환경변화로 인해 서비스의 차별화를 기반으로 하는 질적 중심의 경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는 DB형보다 DC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연금제도의 설계부터 연금지급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개별 근로자의 서비스 요구가 다양하고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유형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은 개별 근로자 또는 기업에 대해 얼마나 차별화되고 저렴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느냐의 경쟁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14〉 퇴직연금 사업자 경쟁환경의 현황과 변화

구분	수요자 행태 현황	경쟁환경의 변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중심 경쟁(가격경쟁) - 서비스 차별화 부족 • 기업규모별 경쟁(대기업 위주) • 자산배분의 획일화(위험성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 중심 경쟁(차별화경쟁) - 서비스 중심으로의 경쟁 심화 • 기업 속성별 경쟁(중소기업 위주) • 자산배분능력 위주 경쟁(운용능력)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은 기업규모별 경쟁에서 기업 속성별 경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퇴직연금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모가 큰 대기업 위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사의 핵심 경쟁력과 여력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쟁양상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목표시장을 선정하여 진출하려는 경향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자산배분의 효율화

에 따른 수익성을 어느 퇴직연금사업자가 보다 제고하느냐로 경쟁의 양상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자산운용규제의 완화에 따른 다양한 투자상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부채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자산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자산배분능력(자산포트폴리오 제고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이 서비스, 중소기업, 자산배분능력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우 DB형보다 DC형에 대한 가입은 보다 증대할 것이다.